보도시점 (전매체) 배포즉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차질없이 이행 중

-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범부처 합동 협의회를 통해 후속조치 지속 이행하고, 소상공인 대책도 발표
-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9.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주제) 소상공인들의 부담·규제를 덜어주고 모두가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실현

민생토론회 당시 청소년 나이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이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여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 사례 다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사실을 충분히 조사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토론회 당일 3시간 내에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이행하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주류 제공 이외에도 담배, 숙박 분야 등 유사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공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2월 15일에는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였다.

*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시 적용받는 행정처분 예외규정을 법령 개정 전 先시행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24.2.14.)

이후 **법제처**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청소년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한 사실이 시시티브이(CCTV) 등으로 확인된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영업정지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6개의 하위법령*을 지난 3~4월 신속하게 개정하여 시행 중이며,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나이 확인 과정에서 **영업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자 면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법률의 경우, 관계부처가 입안 단계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대응한 결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6일 발의 3개월 만에 민생법안으로 여야 이견 없이 신속히 처리되었다.

*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제도 개선 이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방안도 마련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지난 7월 3일에 발표하고, 이후 전기료 지원 대상 추가 확대, 온누리 상품권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도 면밀하게 이행하고 있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주신 관계부처와 국회에 감사드리며, 765만 소상공인들의 권리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켜 나갈 것"이라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순배 (044-204-7820)
		담당자	서기관	유제환 (044-204-7867)
			주무관	서주희 (044-204-7836)
담당 부서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책임자	과 장	마용재 (044-215-5170)
		담당자	사무관	석상훈 (044-215-5171)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누리 (044-203-2251)
		담당자	사무관	임예섭 (044-203-2252)
	공연전통예술과 (공연법)	책임자	과 장	강지은 (044-203-2731)
		담당자	사무관	김지수 (044-203-2738)
	영상콘텐츠산업과 (영화비디오법)	책임자	과 장	김지희 (044-203-2431)
		담당자	사무관	이초롱 (044-203-2432)
	게임콘텐츠산업과(게임산업법)	책임자	과 장	이영민 (044-203-2441)
		담당자	사무관	이장우 (044-203-2446)
	대중문화산업과(음악산업법)	책임자	과 장	김현목 (044-203-2461)
		담당자	사무관	최수진 (044-203-2464)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책임자	과 장	곽순헌 (044-202-2810)
		담당자	사무관	김은희 (044-202-2856)
담당 부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책임자	과 장	장현경 (02-2100-6291)
		담당자	사무관	임수연 (02-2100-6292)
담당 부서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책임자	과 장	정세희 (044-200-6740)
		담당자	사무관	김지희 (044-200-6744)
담당 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종동 (043-719-2010)
		담당자	사무관	안소연 (043-719-2032)

참고 1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법령 개정 내용

□ 하위법령(6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및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을 제외하고 모두 3.29 시행

소관	법령 (분야/대상)	개정 주요내용
여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 (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법령 위반으로 이득을 취한 자)	• 행정처분 (과징금) **면제 사유 확대** * (기존)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정시 (개정) 기존 + **신분확인·폭행협박 증빙 (영상 등) 有**
식약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주류/식품접객업자)	• 행정처분 (영업정지) **면제 사유 확대**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동일
식약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주류/식품접객업자)	• 행정처분 **기준 완화** (1차 위반시 2개월 → 7일) * 4.19 시행 * (기존) 1차 적발시 2개월, 2차 3개월,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폐쇄 (개정) 1차 적발시 **7일**, 2차 **1개월**, 3차 **2개월**
기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담배/소매업자)	• 행정처분 (영업정지) **면제 사유 확대**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동일 • 행정처분 **기준 완화** (1차 위반시 2개월 → 7일) * (기존) 1차 적발시 2개월, 2차 3개월 (개정) 1차 적발시 **7일**, 2차 **1개월**
문체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 (출입시간·객실/노래연습장업자)	• 행정처분 (영업정지) **면제 사유 확대**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동일 • 행정처분 **기준 완화** (1차 위반시 10일→ 7일) *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시 (기존) 1차 적발시 10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등록취소, 영업폐쇄 (개정) 1차 적발시 **7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등록취소, 영업폐쇄 * 보호자 없이 청소년실 외 객실 출입 (기존) 1차 적발시 10일, 2차 2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 (개정) 1차 적발시 **7일**, 2차 2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
문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5 (게임/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 행정처분 **면제 규정 신설** * 3.22 시행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동일

□ 법률 (5개)

※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9.26)

소관	법령 (분야/대상)	개정 주요내용
문체	공연법 제5조제4항 및 제33조 제2항 (공연/공연자 및 공연장 운영자)	• 나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 출입 제한 가능** •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및 폭행, 협박 등으로 공연장의 업주·종사자 등이 나이를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문체	게임산업법 제28조제2항 및 제35조 제2항 (게임/게임물 관련 사업자)	• **증표 제시 요구** 및 **미제시자 입장 제한** 사유 신설 •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공연법과 동일
문체	영화비디오법제30조, 제53조제3항, 제62조제2항 제45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 (영화·비디오물 등 / 영화상영관 경영자/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 **증표 제시 요구** 및 **미제시자 입장 제한** 사유 신설 •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공연법과 동일
문체	음악산업법 제22조제2항 (신설)	• **증표 제시 요구** 및 **미제시자 입장 제한** 사유 신설 * 공연법과 동일
복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2항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	• **증표 제시 요구** 및 **미제시자 입장 제한** 사유 신설 •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공연법과 동일

* **행정처분 면제 관련 내용**은 푸른색, **신분증 제시 근거 및 출입 제한**은 검정색 표기

참고 2 소상공인 · 자영업자 종합대책 주요 내용 (7.3 발표)

[맞춤형 지원 대책]

□ **(경영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 배달료, 인건비** 등 주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매출기반**도 **확충**

○ 정책자금 대출 및 보증부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 등의 **"금융지원 3종세트"** 마련·적극 추진

○ 배달료 지원, 전기요금 요건 완화, 인건비 경감 (키오스크, 서빙로봇), 임대료 (세액공제, 국공유재산 등), 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완화**

○ 매출채권 팩토링을 제조 소상공인에게 우선공급해 **정산기일 단축**, **온누리상품권 제도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통한 매출기반 확대

□ **(성장 촉진)** 유망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화**, 성장유도 **금융·제도 마련**, 해외판로 개척 등을 통해 경쟁력강화와 도약·성장 지원

○ **민간 플랫폼사**와 **협업**해 유망소상공인 발굴·온라인 판로 지원, **성장촉진형 금융지원**, **유예 선택권** 등 제도 개선 추진

○ **첫 수출** 및 **해외 쇼핑몰** 입점, **유망 소비재 수출** 밀착 지원

□ **(재기지원)** 한계·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조정**, **일시상환 유예**, 준비된 **취업·재창업** 지원 강화 등으로 확실한 재기 뒷받침

○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채무조정,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일시 상환유예, 브릿지 보증 등 지원

○ 소상공인 특화 취업프로그램, 고용촉진 장려금, 재창업 프로그램을 연계한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추진, 점포철거비 지원 대폭 확대

[운영체계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

□ **(1단계 : 7.29)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정책정보 통합 안내**

□ **(2단계 : 8.7) 중기통합콜센터**(1357)를 통한 소상공인 안내 가동

□ **(3단계 : '25.1월~) 소상공인 종합지원 시스템 가동**